

의안번호	2218342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6. 6. 24.
추계번호	26C2147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22조 (사회보장급여의 환수)	보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함 1.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2.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3.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※ (현행법)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50조 (사회보장급여의 압류 등의 금지)	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하지 못함 ※ (현행법) 압류만 금지하고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 (사회보장급여의 환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0조 (사회보장급여의 압류 등의 금지)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소액의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 반환에 대한 감면 규정을

의무화할 경우 수입이 감소할 수 있고, 사회보장급여 과오지급분을 상계하지 않을 경우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액의 과잉지급분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- 현재 과잉지급이 발생한 경우, 과잉지급받은 자에게 이후 지급될 급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, 상계가 금지될 경우 원래 수급자가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출 증가분과 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안 제22조제2항제1호는 소액이나 소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제22조제2항제3호는 반환 제외를 적용할 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상자 수 및 반환 면제 규모를 알 수 없음
- 또한, 현 시점에서는 과오지급분을 상계하지 않아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사람의 수와 해당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